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2월 12일, 안호영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2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7회 국회(임사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9.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 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5. 9.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호영의원)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각 부처에서 수집 생산하는 감시·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는 감시·예측 정보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실정 이므로, 법정 지원대상 계획이나 대책에 활용된 실적과 활용할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농작물의 변화 예측정보 등 영향정보를 추가하여 실제로 변화하는 작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확대·작성하여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 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배포하도록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13

조).

또한,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감시·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 기반의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예측정보 등 영향정보를 추가하여 이를 활용하도록하고, 표준시나리오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가 기후위기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활용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9조는 기상청장이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나리오를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 및 표준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상황지도(참고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로 인한 기후위기의 발생이 증가하여 분야별·지역별 기후위기 관련 계획과 대책이 시급함에도,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정책 활용을 위한 보급·확산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개정안은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 입안자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실효적인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표준시나리오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가 기후위기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과학적 예측·분석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이 마련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